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입주자모집공고문



※ 2021.11.16.부터 민영주택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1.10.29.부터 KB모바일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하여 청약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리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고 사이버모델하우스(<http://더파크비스타데시앙.kr>)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 계약은 일시별 '온라인 예약제'로 세대별 방문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홈페이지(<http://더파크비스타데시앙.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당첨자 서류제출은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홈페이지 예약 방문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1522-0650)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계약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리,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견본주택(1522-0650) 및 청약콜센터(1644-7445)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거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완료 전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광주시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합니다.
- 비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동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준수하며, 「같은 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 신청 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므로, 이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우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약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1.) 현재 경기도 광주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0.10.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단 본 아파트가 속한 경기도 광주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충족 할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광주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예치금은 무관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청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률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더파크비스타데시앙.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본 아파트는 500%)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전매제한기간

- 해당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거 조정대상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시 소인처리)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로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해당지역 (경기도 광주시 2년이상 연속거주자)	기타지역 (광주시 2년미만/경기도/ 인천시/서울시 거주자)				
일 정	2022년 10월 31일(월)	2022년 11월 01일(화)	2022년 11월 02일(수)	2022년 11월 03일(목)	2022년 11월 09일(수)	2022년 11월 10일(목) ~ 2022년 11월 20일(일)	2022년 11월 21일(월) ~ 2022년 11월 25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16:00)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건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5-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은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격검수를 완료하신 후에 예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예약 가능시간은 대외여건(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예정)
- 2021.09.27.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7480호(2022.10.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 1-39 외 17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7층~25층 18개동 총 1,690세대

[특별공급 679세대(일반[기관추천] 115세대, 다자녀가구 169세대, 신혼부부 230세대, 노부모부양 50세대, 생애최초 1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 간 주 거 택	2022000720	1	059.9607A	59A	59.9607	18.8702	78.8309	40.8343	119.6652	36.5896	143	16	14	28	4	14	76	67	6
		2	059.9893B	59B	59.9893	18.9803	78.9696	40.8538	119.8234	36.6076	121	11	12	24	3	12	62	59	5
		3	084.9099A	84A	84.9099	25.1161	110.0260	57.8253	167.8513	51.8149	484	46	49	97	14	49	255	229	21
		4	084.9823B	84B	84.9823	26.2308	111.2131	57.8747	169.0878	51.8591	213	22	21	43	7	21	114	99	9
		5	084.9963C	84C	84.9963	25.5153	110.5116	57.8842	168.3958	51.8677	191	20	19	38	6	19	102	89	8
		6	114.9779A	114A	114.9779	32.4655	147.4434	78.3024	225.7458	70.1634	253	-	26	-	8	-	34	219	11
		7	114.9822B	114B	114.9822	32.9938	147.9760	78.3053	226.2813	70.1658	144	-	14	-	4	-	18	126	6
		8	114.9165C	114C	114.9165	32.6507	147.5672	78.2606	225.8278	70.1259	141	-	14	-	4	-	18	123	6
합 계											1,690	115	169	230	50	115	679	1,011	72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청약시, 전용면적기준)	059.9607A	059.9893B	084.9099A	084.9823B	084.9963C	114.9779A	114.9822B	114.9165C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114A	114B	11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동별 (라인)	층구분	세대 수	분양가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체결 시	2022.12.26.	2023.04.25.	2023.10.25.	2024.04.25.	2024.10.25.	2025.04.25.	2025.10.24.	입주지정일		
059.9607A	114동 1호 115동 1호 116동 1호 117동 1,3호 118동 1호	1층	5	186,481,608	201,018,392	-	387,500,000	20,000,000	1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116,250,000	
		2층	6	186,481,608	207,518,392	-	394,000,000	20,000,000	1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3-5층	18	186,481,608	215,518,392	-	402,000,000	20,000,000	2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6-9층	24	186,481,608	223,518,392	-	410,000,000	20,000,000	2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10층 이상	90	186,481,608	231,518,392	-	418,000,000	20,000,000	2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059.9893B	114동 2호 115동 2호 116동 2호 117동 2호 118동 2호	1층	5	183,194,479	196,805,521	-	380,000,000	20,000,000	1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2층	5	183,194,479	203,805,521	-	387,000,000	20,000,000	1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3-5층	15	183,194,479	210,805,521	-	394,000,000	20,000,000	1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6-9층	20	183,194,479	219,805,521	-	403,000,000	20,000,000	2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10층 이상	76	183,194,479	227,805,521	-	411,000,000	20,000,000	2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084.9099A	101동 1,3호 102동 2,4호 103동 2,4호 110동 1,3호 111동 1,3호 112동 1,3호 113동 1,3호 114동 3호 115동 3호 116동 3,4호 117동 4,5호 118동 3호	1층	8	263,318,950	283,681,050	-	547,000,000	20,000,000	3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2층	21	263,318,950	291,681,050	-	555,000,000	20,000,000	3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3-5층	63	263,318,950	302,681,050	-	566,000,000	20,000,000	3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69,800,000
		6-9층	84	263,318,950	314,681,050	-	578,000,000	20,000,000	3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73,400,000
		10층 이상	308	263,318,950	326,681,050	-	590,000,000	20,000,000	3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77,000,000
084.9823B	101동 2호 102동 3호 103동 3호 110동 2호 111동 2호 112동 2호 113동 2호 114동 4호 118동 4호	1층	9	260,619,380	280,380,620	-	541,000,000	20,000,000	3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2층	9	260,619,380	289,380,620	-	550,000,000	20,000,000	3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3-5층	27	260,619,380	300,380,620	-	561,000,000	20,000,000	3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6-9층	36	260,619,380	312,380,620	-	573,000,000	20,000,000	3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10층 이상	132	260,619,380	324,380,620	-	585,000,000	20,000,000	3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75,500,000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동별 (라인)	층구분	세대 수	분양가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체결 시	2022.12.26.	2023.04.25.	2023.10.25.	2024.04.25.	2024.10.25.	2025.04.25.	2025.10.24.		입주지정일
084.9963C	101동 4호 102동 1호 103동 1호 110동 4호 111동 4호 112동 4호 113동 4호 115동 4호	1층	8	256,227,204	275,772,796	-	532,000,000	20,000,000	3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2층	8	256,227,204	284,772,796	-	541,000,000	20,000,000	3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3-5층	24	256,227,204	295,772,796	-	552,000,000	20,000,000	3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6-9층	32	256,227,204	306,772,796	-	563,000,000	20,000,000	3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10층 이상	119	256,227,204	318,772,796	-	575,000,000	20,000,000	3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172,500,000
114.9779A	104동 2,4호 105동 2,4호 106동 1호 107동 1,3호 108동 2,4호 109동 2,4호	1층	7	341,126,648	368,066,684	36,806,668	746,000,000	20,000,000	5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223,800,000
		2층	11	341,126,648	378,975,775	37,897,577	758,000,000	20,000,000	5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227,400,000
		3-5층	33	341,126,648	393,521,229	39,352,123	774,000,000	20,000,000	5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232,200,000
		6-9층	44	341,126,648	408,975,775	40,897,577	791,000,000	20,000,000	5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37,300,000
		10층 이상	158	341,126,648	423,521,229	42,352,123	807,000,000	20,000,000	6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242,100,000
114.9822B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2호 107동 2호 108동 3호 109동 3호	1층	6	342,157,250	370,766,136	37,076,614	750,000,000	20,000,000	5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225,000,000
		2층	6	342,157,250	380,766,136	38,076,614	761,000,000	20,000,000	5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3-5층	18	342,157,250	395,311,591	39,531,159	777,000,000	20,000,000	5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6-9층	24	342,157,250	409,857,045	40,985,705	793,000,000	20,000,000	5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37,900,000
		10층 이상	90	342,157,250	425,311,591	42,531,159	810,000,000	20,000,000	6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43,000,000
114.9165C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3호 107동 4호 108동 1호 109동 1호	1층	5	341,110,312	369,899,716	36,989,972	748,000,000	20,000,000	5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24,400,000
		2층	6	341,110,312	379,899,716	37,989,972	759,000,000	20,000,000	5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3-5층	18	341,110,312	394,445,171	39,444,517	775,000,000	20,000,000	5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32,500,000
		6-9층	24	341,110,312	408,990,625	40,899,063	791,000,000	20,000,000	5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37,300,000
		10층 이상	88	341,110,312	423,536,080	42,353,608	807,000,000	20,000,000	6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242,100,000

▣ 공통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 관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함. 또한,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호수에 따라 동일한 주택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 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제 또는 해지 조치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대행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결과에 따른 분양가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하였으며,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의 경우 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금의 납부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주택인도증서 발급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입주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84A	84B	84C	114A	114B	114C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6	2	2	-	-	-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2	1	1	-	-	-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1	1	-	-	-	6	
	중소기업 근로자	6	3	18	9	8	-	-	-	44	
	장 애 인	경기도	5	4	15	6	5	-	-	-	35
		서울특별시	-	-	1	1	1	-	-	-	3
		인천광역시	-	-	1	1	1	-	-	-	3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1	1	1	1	1	-	-	-	5	
소계		16	11	46	22	20	-	-	-	11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	12	49	21	19	26	14	14	169	
신혼부부 특별공급		28	24	97	43	38	-	-	-	2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3	14	7	6	8	4	4	50	
생애최초 특별공급		14	12	49	21	19	-	-	-	115	
합 계		76	62	255	114	102	34	18	18	67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93 2087 1465"> <thead> <tr> <th data-bbox="286 1193 734 1257">구분</th> <th data-bbox="734 1193 1187 1257">서울특별시</th> <th data-bbox="1187 1193 1639 1257">인천광역시</th> <th data-bbox="1639 1193 2087 1257">경기도(광주시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6 1257 734 1305">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34 1257 1187 1305">300만원</td> <td data-bbox="1187 1257 1639 1305">250만원</td> <td data-bbox="1639 1257 2087 1305">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05 734 1353">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34 1305 1187 1353">600만원</td> <td data-bbox="1187 1305 1639 1353">400만원</td> <td data-bbox="1639 1305 2087 1353">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53 734 1401">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34 1353 1187 1401">1,000만원</td> <td data-bbox="1187 1353 1639 1401">700만원</td> <td data-bbox="1639 1353 2087 1401">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401 734 1465">모든면적</td> <td data-bbox="734 1401 1187 1465">1,500만원</td> <td data-bbox="1187 1401 1639 1465">1,000만원</td> <td data-bbox="1639 1401 2087 1465">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광주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광주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및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기도부보훈지청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 경기도 광주시청 지역개발과
- ※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의2에 의거,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함.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 시 경기도 광주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 경기도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경쟁 시 경기도 광주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p>(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3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년 10월 21일 기준	2021년 소득(전년도)	2021년 소득(전년도)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년 10월 21일 기준	2021년 소득(전년도)	2021년 소득(전년도)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신청자격 요건</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p> <p>※ 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광주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및 제4항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75%	25%
전용면적 85㎡ 초과	30%	70%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자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p>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0.3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5-1)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광주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기타지역 (광주시 2년미만/경기도/인천시/서울시 거주자)	2022.11.01.(화)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11.03.(목)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현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차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1.09.(수)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1.21.(월) ~ 2022.11.25.(금)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5-1)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더파크비스타데시앙.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09. (수) ~ 2022.11.18. (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09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등)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안내

구분	자격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시	2022.11.10.(목) ~ 2022.11.20.(일) 11일간 (10:00~16:00)	2022.11.21.(월) ~ 2022.11.25.(금) (10:00~16:00) (사전 계약방문예약 시간 내 방문)
장소	건본주택(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5-1)	
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일부	당첨자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감영증 예방관리 수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당사 홈페이지(<http://더파크비스타데시앙.kr>) 내에서 사전방문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특별공급 신청자 중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 가능)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공지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시, 당첨자(예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상기 일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일 및 해당시간에 건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 유무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정당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이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또는 건본주택(문의 1522-065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①특별공급신청서, 특별공급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 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③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⑦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⑧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⑨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⑩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참고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
		○	⑦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입양의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③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⑤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⑧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⑨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청약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⑤ 출입국 사실 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②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		③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납부내역증명 포함)
	○		④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⑤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⑦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⑧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⑨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④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포함 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⑤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③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소형자가 주택을 소명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	①,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을 반드시 제출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②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동사무소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소득세,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접수장소(견본주택)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 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아래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여부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의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가정제 당첨자 • 가정제 당첨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 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포함 하여“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입금증(분양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금)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료(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인지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수입인지 구매금액:15만원 - 구매절차: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 or 비회원구매→구매→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부동산 등 소유권이전/150,000원/1건)→테스트출력→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출력 ※ 주의사항: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첨 유형별 추가 보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자격 서류검수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한 서류 ※ 모든 당첨자는 부적격 사전 검수를 완료해야만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입인지 구입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일이며, 계약체결일 경과 이후 구입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익일~3개월이내(가산세 100%), 3개월초과~6개월이내(가산세 200%), 6개월 초과(가산세 300%)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됨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IBK기업은행	242-093998-04-047	㈜무궁화신탁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101동 101호 홍길동: 101101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타 금융기관 미적용)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며, 계약자는 입주시점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사업주체에서 대납한 이자를 시행위탁자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용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 일체의 이의를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월 : 2026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층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환경보전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맘스·플레이클럽/웰컴클럽, 실내체육관, 다함께 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타입(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59A	18,370,000	1,830,000	1,830,000	14,710,000
59B	17,500,000	1,750,000	1,750,000	14,000,000
84A	24,800,000	2,480,000	2,480,000	19,840,000
84B	21,400,000	2,140,000	2,140,000	17,120,000
84C	23,700,000	2,370,000	2,370,000	18,960,000
114A	28,740,000	2,870,000	2,870,000	23,000,000
114B	25,420,000	2,540,000	2,540,000	20,340,000
114C	26,910,000	2,690,000	2,690,000	21,53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20.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발코니, 대피공간(하향식피난구) 등을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2023년 4월 이후 불가)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고,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 환기설비, 소방기구,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확장일 경우 해당 상부 세대 바닥에는 층간차음재 대신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하층 발코니 비확장 세대로 인해 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하부 세대가 확장일 경우 해당 하부 세대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상층 발코니 비확장 세대로 인해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상부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세대별로 확장세대 대비 마량자재, 우물천장 디자인, 가구 디자인, 주방가구 디자인, 제품 품목이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윗층세대의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천장 단열을 위하여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샤시 설치 후 입주하여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 샤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확장일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벽면에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일부 벽체의 돌출 및 발코니 실사용 면적(서비스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시공자 포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수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칼라,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하향식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샷시,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 샷시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하향식피난구) 도어 및 손잡이는 본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우리은행	1005-804-410272	㈜태영건설 외 2사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101호 홍길동 → 10111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1) 시스템 에어컨(삼성전자)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주력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59A	선택1	거실+안방	2대	3,454,000	340,000	340,000	2,774,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 1,2	4대	5,973,000	590,000	590,000	4,793,000
59B	선택1	거실+안방	2대	3,454,000	340,000	340,000	2,774,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 1,2	4대	5,973,000	590,000	590,000	4,793,000
84A	선택1	거실+안방	2대	4,158,000	410,000	410,000	3,338,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 1,2	4대	7,238,000	720,000	720,000	5,798,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 1,2+알파룸	5대	8,184,000	810,000	810,000	6,564,000
84B	선택1	거실+안방	2대	4,158,000	410,000	410,000	3,338,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 1,2+알파룸	5대	8,184,000	810,000	810,000	6,564,000
84C	선택1	거실+안방	2대	4,158,000	410,000	410,000	3,338,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 1,2	4대	7,238,000	720,000	720,000	5,798,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 1,2+알파룸	5대	8,184,000	810,000	810,000	6,564,000
114A	선택1	거실+주방+안방	3대	5,951,000	590,000	590,000	4,771,000
	선택2	거실+주방+안방+침실 1,2	5대	8,734,000	870,000	870,000	6,994,000
	선택3	거실+주방+안방+침실 1,2,3	6대	9,779,000	970,000	970,000	7,839,000
114B	선택1	거실+거실2+안방	3대	5,951,000	590,000	590,000	4,771,000
	선택2	거실+거실2+안방+침실 1,2,3	6대	9,779,000	970,000	970,000	7,839,000
114C	선택1	거실+거실2+안방	3대	5,951,000	590,000	590,000	4,771,000
	선택2	거실+거실2+안방+침실 1,2	5대	8,734,000	870,000	870,000	6,994,000
	선택3	거실+거실2+안방+침실 1,2,3	6대	9,779,000	970,000	970,000	7,839,000

-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유상)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거실/안방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택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각실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유상) 설치함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건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납부될 예정이며 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2023년 4월 이후 불가)
- 시스템 에어컨 상기 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며,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 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기본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월패드 및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무선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단,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된 에어컨의 경우 월패드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2)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59A	현관/거실	바닥타일	현관(인조강화석)/거실, 주방, 복도(포세린타일)	1,507,000	150,000	150,000	1,207,000	
		아트월	거실 아트월(1200*1200 세라믹)	2,332,000	230,000	230,000	1,872,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748,000	70,000	70,000	608,000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145,000	210,000	210,000	1,725,000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설치	1,166,000	110,000	110,000	946,000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341,000	30,000	30,000	281,000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 3도어 (RR40A7895AP,RZ34A7865AP,RQ34A7845AP)	6,523,000	650,000	650,000	5,223,000	
		인덕션	선택1	SK매직 빌트인 3구 인덕션(IHR-BF30C)	968,000	90,000	90,000	788,000
			선택2	SK매직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GRA-B1322H)(인덕션2+가스1)	1,034,000	100,000	100,000	834,000
		오븐	삼성 빌트인 스마트오븐 (NQ36A6555CK(36L))	440,000	4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DW60A8575FS(12인용))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침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2,783,000	270,000	270,000	2,243,000	
			불박이장	2,497,000	240,000	240,000	2,017,000	
		침실1	불박이장	1,089,000	100,000	100,000	889,000	
침실2		불박이장	946,000	90,000	90,000	766,000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강화	바닥+벽 타일 /젠다이 및 세면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781,000	70,000	70,000	641,000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59B	현관/거실	바닥타일	현관(인조강화석)/거실, 주방, 복도(포세린타일)	1,496,000	140,000	140,000	1,216,000	
		아트월	거실 아트월(1200*1200 세라믹)	2,332,000	230,000	230,000	1,872,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715,000	70,000	70,000	575,000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1,980,000	190,000	190,000	1,600,000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설치	1,067,000	100,000	100,000	867,000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308,000	30,000	30,000	248,000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 3도어 (RR40A7895AP,RZ34A7865AP,RQ34A7845AP)	6,523,000	650,000	650,000	5,223,000	
		인덕션	선택1	SK매직 빌트인 3구 인덕션(IHR-BF30C)	968,000	90,000	90,000	788,000
			선택2	SK매직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GRA-B1322H)(인덕션2+가스1)	1,034,000	100,000	100,000	834,000
		오븐	삼성 빌트인 스마트오븐 (NQ36A6555CK(36L))	440,000	4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DW60A8575FS(12인용))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침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2,750,000	270,000	270,000	2,210,000	
			불박이장	2,497,000	240,000	240,000	2,017,000	
		침실1	불박이장	1,089,000	100,000	100,000	889,000	
침실2		불박이장	946,000	90,000	90,000	766,000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강화	바닥+벽 타일 /젠다이 및 세면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781,000	70,000	70,000	641,000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84A	현관/거실	바닥타일	현관(인조강화석)/거실, 주방, 복도(포세린타일)	2,277,000	220,000	220,000	1,837,000	
		아트월	거실 아트월(1200*1200 세라믹)	2,739,000	270,000	270,000	2,199,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1,056,000	100,000	100,000	856,000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101,000	210,000	210,000	1,681,000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 3도어 (RR40A7895AP,RZ34A7865AP,RQ34A7845AP)	6,622,000	660,000	660,000	5,302,000	
		인덕션	선택1	SK매직 빌트인 3구 인덕션(IHR-BF30C)	968,000	90,000	90,000	788,000
			선택2	SK매직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GRA-B1322H)(인덕션2+가스1)	1,034,000	100,000	100,000	834,000
		오븐	삼성 빌트인 스마트오븐 (NQ36A6555CK(36L))	440,000	4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DW60A8575FS(12인용))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침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불박이장	3,058,000	300,000	300,000	2,458,000	
		침실1	불박이장	1,320,000	130,000	130,000	1,060,000	
		침실2	불박이장	1,089,000	100,000	100,000	889,000	
		주방 + 알파룸	복도/알파룸 팬트리	2,343,000	230,000	230,000	1,883,000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강화	바닥+벽 타일 /젠다이 및 세면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946,000	90,000	90,000	766,000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84B	현관/거실/복도	바닥타일	현관(인조강화석)/거실, 주방, 복도(포세린타일)	2,079,000	200,000	200,000	1,679,000	
		아트월	거실 아트월(1200*1200 세라믹)	2,618,000	260,000	260,000	2,098,000	
		복도장		1,397,000	130,000	130,000	1,137,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770,000	70,000	70,000	630,000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024,000	200,000	200,000	1,624,000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설치	1,045,000	100,000	100,000	845,000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308,000	30,000	30,000	248,000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 3도어 (RR40A7895AP,RZ34A7865AP,RQ34A7845AP)	6,622,000	660,000	660,000	5,302,000	
		인덕션	선택1	SK매직 빌트인 3구 인덕션(IHR-BF30C)	968,000	90,000	90,000	788,000
			선택2	SK매직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GRA-B1322H)(인덕션2+가스1)	1,034,000	100,000	100,000	834,000
	오븐	삼성 빌트인 스마트오븐 (NQ36A6555CK(36L))	440,000	4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DW60A8575FS(12인용))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침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3,278,000	320,000	320,000	2,638,000	
			불박이장	3,058,000	300,000	300,000	2,458,000	
		침실1	불박이장	1,320,000	130,000	130,000	1,060,000	
침실2		불박이장	1,089,000	100,000	100,000	889,000		
알파룸		슬라이딩 유리도어	3,113,000	310,000	310,000	2,493,000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강화	바닥+벽 타일 /젠다이 및 세면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946,000	90,000	90,000	766,000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84C	현관/거실	바닥타일		현관(인조강화석)/거실, 주방, 복도(포세린타일)	2,167,000	210,000	210,000	1,747,000
		아트월		거실+복도 아트월(1200*1200 세라믹)	5,247,000	520,000	520,000	4,207,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770,000	70,000	70,000	630,000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013,000	200,000	200,000	1,613,000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설치	1,045,000	100,000	100,000	845,000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308,000	30,000	30,000	248,000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 3도어 (RR40A7895AP,RZ34A7865AP,RQ34A7845AP)	6,622,000	660,000	660,000	5,302,000
		인덕션	선택1	SK매직 빌트인 3구 인덕션(IHR-BF30C)	968,000	90,000	90,000	788,000
			선택2	SK매직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GRA-B1322H)(인덕션2+가스1)	1,034,000	100,000	100,000	834,000
		오븐		삼성 빌트인 스마트오븐 (NQ36A6555CK(36L))	440,000	4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DW60A8575FS(12인용))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침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3,036,000	300,000	300,000	2,436,000
				불박이장	3,058,000	300,000	300,000	2,458,000
		침실1		워커인장	957,000	90,000	90,000	777,000
침실2/알파룸		선택1	침실2 불박이장	1,089,000	100,000	100,000	889,000	
		알파룸	슬라이딩 유리도어	3,113,000	310,000	310,000	2,493,000	
선택2		알파룸+침실2	복도팬트리+불박이장	3,663,000	360,000	360,000	2,943,000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강화		바닥+벽 타일 /젠다이 및 세면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946,000	90,000	90,000	766,000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114A	현관/거실	바닥타일		현관(인조강화석)/거실, 주방, 복도(포세린타일)	2,882,000	280,000	280,000	2,322,000
		아트월		거실 아트월(1200*1200 세라믹)	2,992,000	290,000	290,000	2,412,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1,287,000	120,000	120,000	1,047,000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497,000	240,000	240,000	2,017,000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 3도어 (RR40A7895AP,RZ34A7865AP,RQ34A7845AP)	6,523,000	650,000	650,000	5,223,000
		인덕션	선택1	SK매직 빌트인 3구 인덕션(IHR-BF30C)	968,000	90,000	90,000	788,000
			선택2	SK매직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GRA-B1322H)(인덕션2+가스1)	1,034,000	100,000	100,000	834,000
		오븐		삼성 빌트인 스마트오븐 (NQ36A6555CK(36L))	440,000	4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DW60A8575FS(12인용))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침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4,257,000	420,000	420,000	3,417,000
				불박이장	3,190,000	310,000	310,000	2,570,000
		침실1		불박이장	1,320,000	130,000	130,000	1,060,000
		침실2		불박이장	1,320,000	130,000	130,000	1,060,000
		주방 + 침실3		장식장+침실3팬트리	7,095,000	700,000	700,000	5,695,000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강화		바닥+벽 타일 /젠다이 및 세면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1,276,000	120,000	120,000	1,036,000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114B	현관/거실	바닥타일	현관(인조강화석)/거실, 주방, 복도(포세린타일)	2,728,000	270,000	270,000	2,188,000	
		아트월	거실+복도 아트월(1200*1200 세라믹)	5,830,000	580,000	580,000	4,670,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957,000	90,000	90,000	777,000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497,000	240,000	240,000	2,017,000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설치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495,000	40,000	40,000	415,000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 3도어 (RR40A7895AP,RZ34A7865AP,RQ34A7845AP)	6,523,000	650,000	650,000	5,223,000	
		인덕션	선택1	SK매직 빌트인 3구 인덕션(IHR-BF30C)	968,000	90,000	90,000	788,000
			선택2	SK매직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GRA-B1322H)(인덕션2+가스1)	1,034,000	100,000	100,000	834,000
		오븐	삼성 빌트인 스마트오븐 (NQ36A6555CK(36L))	440,000	4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DW60A8575FS(12인용))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침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3,916,000	390,000	390,000	3,136,000	
			불박이장	3,190,000	310,000	310,000	2,570,000	
		침실1	불박이장	1,320,000	130,000	130,000	1,060,000	
침실2		불박이장	1,320,000	130,000	130,000	1,060,000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강화	바닥+벽 타일 /젠다이 및 세면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1,276,000	120,000	120,000	1,036,000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114C	현관/거실	바닥타일	현관(인조강화석)/거실, 주방, 복도(포세린타일)	3,366,000	330,000	330,000	2,706,000		
		아트월	거실+복도 아트월(1200*1200 세라믹)	6,127,000	610,000	610,000	4,907,000		
	주방	주방 강화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957,000	90,000	90,000	777,000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497,000	240,000	240,000	2,017,000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설치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495,000	40,000	40,000	415,000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3종 SET (냉장+냉동+김치) / 3도어 (RR40A7895AP,RZ34A7865AP,RQ34A7845AP)	6,523,000	650,000	650,000	5,223,000		
		인덕션	선택1	SK매직 빌트인 3구 인덕션(IHR-BF30C)	968,000	90,000	90,000	788,000	
			선택2	SK매직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GRA-B1322H)(인덕션2+가스1)	1,034,000	100,000	100,000	834,000	
		오븐	삼성 빌트인 스마트오븐 (NQ36A6555CK(36L))	440,000	4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DW60A8575FS(12인용))	1,683,000	160,000	160,000	1,363,000			
	침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3,883,000	380,000	380,000	3,123,000		
			불박이장	3,190,000	310,000	310,000	2,570,000		
		침실1	워커인장	1,243,000	120,000	120,000	1,003,000		
		침실2/침실3	선택1	침실3	불박이장	1,320,000	130,000	130,000	1,060,000
			선택2	침실2+침실3	복도팬트리+침실2 불박이장	3,773,000	370,000	370,000	3,033,000
			선택3	침실2+침실3	침실3+침실내 드레스룸	1,133,000	110,000	110,000	913,000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강화	바닥+벽 타일 /젠다이 및 세면대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1,276,000	120,000	120,000	1,036,000		

3) 기본형 세대 추가 선택품목(유상)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주택형)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25.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주방	주방TV	330,000	30,000	30,000	270,000
		주방 작업등	220,000	20,000	20,000	180,000
	욕실	부부욕실 비데	220,000	20,000	20,000	180,000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198,000	10,000	10,000	178,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경우 시행수탁자가 공급하는 품목이 아닌바, 시행수탁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공간계약으로 인해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기본형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확장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타일 유상옵션 미선택 시 타일은 300*600, 상판은 강화대리석으로 시공됩니다.
- 아트월 유상옵션 미선택 시 벽체는 400*800 타일 또는 벽지(타일 연장부분)로 시공됩니다.
- 바닥타일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 주방, 복도 바닥은 강마루, 현관바닥은 타일로 시공됩니다.
- 슬라이딩도어 유상옵션 선택 시 도어 제작 및 시공업체는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디테일 소재등의 변경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알파룸 선택 유상옵션 선택 시 가구 제작 및 시공업체는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액세서리, 디테일, 소재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강화(엔지니어드 스톤)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주방 벽체는 타일로 시공됩니다.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엔지니어드 스톤) 미선택 시 아일랜드장 상판은 인조대리석(MMA)로 시공됩니다.
- 주방강화 선택 세대는 기본제공인 주방 상판(MMA 인조대리석), 주방 벽체(타일)를 제외하며, 판매가는 기본제공 주방 상판(MMA 인조대리석), 주방 벽체(타일)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 세대는 기본제공인 아일랜드장 상판(MMA 인조대리석)을 제외하며, 판매가는 아일랜드장 상판(MMA 인조대리석)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중도금 납부시점 이후 불가)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유상)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선택 시,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별로 확장형 세대 대비 마감자재, 우물천장 디자인, 가구 디자인, 조명기구 설치위치, 커튼박스, 주방가구 디자인, 제품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경우, 확장형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 포함)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	우리은행	1005-804-410272	㈜태영건설 외 2사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101호 홍길동 → 10111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컷, 단위세대는 2022년 10월 17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구역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토지계획이용계획도의 개발계획 등은 관련주체 소관으로 당사와 무관합니다. - 시설물, 외관, 색채 차호 조경계획등은 위치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옥탑부위의 외부공조시설 및 반사경 등은 표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내용상에 기재된 교통, 학교 개설 및 배정 등은 사업주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면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경기도 광주시청, 사업주체 및 시공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공급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관에 관련 내용으로 정보 제공 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 등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경기도 광주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파손자) 책임 하에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이사짐용 사다리차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및 마감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내 비상차량 도로를 활용 할 수 있으나, 동시 입주 등으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만한 입주를 위해 도로는 일방통행 등으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하기로 합니다. - 단지 부대복지시설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사양 등 주요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또는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분	내용
공급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귀책 사유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환경보전,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차·보도 선형, 위치,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향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고, 2.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3.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나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등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 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경기도 광주시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제출과 같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 동·호수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설치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분양대상물건의 부수 계약사항으로 분양대금과 더불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취득세 부과 기준금액이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급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구획을 지정/분할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에 한하여 시공 및 제공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및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장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TV 등 홈네트워크 관련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 설치주택형과 상이함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타입 평면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사항은 대관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계약 전 인지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 내 시설물(난간,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및 동표시 등 각종 외벽 부착 사인물) 및 옥상 조형물, 색채, 저층 색채 등 2. 조경시설물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위치 등 3.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저하가 아닌 경우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적용 시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소명이 부족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납입한 분양대금은 환불이 가능하나, 환불에 대한 별도의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준수하고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달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주변현황,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각의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은 2022년 10월 17일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일이 2022년 10월 17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경기도 광주시,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허가 과정에서 본 아파트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중앙공원 조성 예정으로, 공원부지 지표면 조성계획에 따라 단지와 연결부분 및 단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 및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앙공원 개발은 향후 사업 추진 중 계획이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시설물로 인해 소음, 차폐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중앙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라, 인접 세대 주거환경(소음, 조망 등)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주변 전신주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주의 지중화 및 이설은 불가능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남측에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남측에 경총대로 및 경강선 지하철과 인접하여 환경피해(소음, 진동, 분진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인근 분묘(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서 조망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헹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대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지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부지는 당 사업자가 학교 부지만 조성하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학교설립 여부 및 추진은 교육지원청의 교육부 중앙재정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당 사업지의 준공 및 입주 시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로 인해 증가하는 중학생의 경우 광주중학교 내 중학교로, 증가 고등학생의 경우 광주시 기존 고등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대복지시설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p>※ 위 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주요내용>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입주자들"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p>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분	내용
동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쓰레기 분리수거장등 의 이동은 불가함.)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외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일부동의 경우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옹벽, 자연석쌓기, 비타면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외곽부에 면한 경사면 처리는 상세설계 진행에 따라 구조 및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에는 보행 안전을 위하여 난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및 색채 등),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시 시공사 특화디자인 및 경관자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축소 제작되는 한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놀이터 및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관련설 급배기구, 지하 채광용 Top-light, 외부 계단실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형태와 위치는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대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차, 옹벽의 높이 및 형태,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뿔칠/수성페인트가 혼용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석재/석재뿔칠/알루미늄시트/수성페인트의 혼용으로 마감되며, 석재뿔칠, 수성페인트의 적용범위는 현장 여건에 의해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쓰레기 분리수거장등 의 이동은 불가함.)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차 구간 옹벽은 2중 시설물(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설치위치 :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2동, 117동, 동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경우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단지계획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 모형에 표현된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연환풍 D.A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분진,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연환풍 D.A 위치 하단표시) 101동 3, 4호 / 102동 1, 2호 / 103동 1, 2호 / 104동 2, 3호 / 105동 2, 4호 / 106동 1호 / 107동 3호 / 108동 1, 4호 / 109동 2, 3호 / 110동 1, 4호 / 111동 1, 4호 / 112동 2, 4호 / 113동 3호 / 114동 2, 3호 / 115동 1, 3호 / 116동 3호 / 116동 2호, 117동 5호 사이 1개소 / 117동 2, 4호 / 118동 2, 3호 - 환풍 D.A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분진,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환풍 D.A 위치 하단표시) 101동 2호, 103동 1호 사이 1개소 / 103동 3, 4호 / 103동 3호, 104동 1호 사이 1개소 / 104동 1호 / 105동 1, 3호 / 109동 3호, 110동 4호 사이 1개소 / 110동 4호 / 112동 1, 4호 / 113동 2호 115동 4호 사이 1개소 / 114동 1호, 116동 4호 사이 1개소 / 116동 1호, 118동 4호 사이 2개소 / 115동 1호 / 117동 1호 / 118동 1,2호 사이 1개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지자체 조례와 사용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위치 하단 표시) 101동 1호 / 102동 3호 / 103동 1, 3호 / 104동 1호 / 105동 1,2,3,4호 / 106동 3호 / 107동 2호 / 108동 1,3,4호 / 109동 1,4호 / 110동 4호 / 111동 4호 / 112동 1,4호 / 113동 1,4호 / 114동 4호 / 115동 1,4호 / 116동 1호 / 117동 1호 / 118동 4호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소함(재활용품 집하장 포함) 계획되어 있어 냄새,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1동과 근린생활시설-1 사이 주민공동시설(맘스스테이션-1)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1동 하부 쪽에는 근린생활시설-1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에는 어린이집-1이 배치되어 있으며, 옥상마감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4동과 105동 사이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맘스·플레이클럽/웰컴클럽,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6동과 112동 사이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관, 피트니스, 실내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7동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8동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다함께돌봄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15동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116동과 117동과 118동 사이에는 어린이집-2이 배치되어 있으며, 옥상마감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2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맘스스테이션-3)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118동 하부 쪽에는 근린생활시설-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12동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맘스스테이션-2)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주·부 출입구 인근에 경비실-1,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4동 인근에 부대시설(어린이집-1, 맘스·플레이클럽/웰컴클럽, 경로당) 실외기실, 제연환풍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18동 인근에 부대시설(어린이집-2, 맘스스테이션-3) 실외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과 112동사이 부대시설(실내체육관) 실외기실 및 공조실 D.A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7동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 실외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8동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다함께돌봄센터) 실외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15동 하부 쪽에는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실외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 쪽에는 근린생활시설-1 옥상에 실외기, 주방배기탈취기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18동 하부 쪽에는 근린생활시설-2 지하1층에 실외기, 주방배기탈취기, 환풍, 제연환풍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부 출입구 경비실-1,2 1층에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106동 사이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106동 사이 지하층의 기계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103동, 104~106동, 107~111동, 112~115동, 116~118동 사이 지하층의 우수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단지	<p>단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112동 사이, 118동 전면에 부대시설 기계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지하층에 제연팬룸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BI/CI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및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적용 시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CI 및 BI 등의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이후 위치 및 내용이 확정됩니다.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층 피트층과 면한 부위는 석재뿔칠 또는 수성페인트 마감이 적용됩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형태(옥상 조형물, 축벽모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옹벽),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됩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일조공간제어시스템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에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방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축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 축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조경계획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시의 도서내용을 충족하여 식재하되 그 식재위치는 식재의 생육환경과 형태,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되어 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술작품은 관련 법령과 심의절차를 거쳐 제작 및 설치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교목 및 관목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동 출입구의 출입문, 복도, 경사로, 계단, 난간 등은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별 대지경계선 외부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본 사업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와 무관합니다.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단지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조정식재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의 입주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발생 및 개구리 서식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곱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시설 및 기본마감재는 제공되나, 내부 집기류 및 이동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작은도서관 및 입주민회의실, 경로당에서 입주 전후 입주인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 마감재, 도어스펙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맘스·플레이클럽, 웰컴클럽, 맘스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돌봄센터, 피트니스, GX룸 및 작은도서관 내부벽체의 마감재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자전거보관소의 크기, 위치, 개소는 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 시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의 인근에 위치하는 일부 세대는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입주후 입주인 불편해소(입주관리, 하자점수 및 보수)를 위해 공용공간을 시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에 따라 옥외안테나의 설치 위치는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2동, 115동, 118동 옥상층이고,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는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2동, 115동, 118동 옥상층과 지하주차장[ZONE1] 103동 지하1층 인근 현룸, 지하주차장[ZONE2] 104동 PIT, 107동 PIT, 110동 지하3층 인근 현룸 /104동 PIT, 107동 PIT, 110동 지하1층 인근 현룸, 지하주차장[ZONE3] 112동 지하1층 인근 현룸, 지하주차장[ZONE4] 117동 지하1층 인근 현룸에 설치 되며, 설치 위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계단의 Type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 저층 세대의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다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용설비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서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본 사업장 내 도시가스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를 통하여 공급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EV홀 등 동파 위험구간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휨롤D.A, 환기팬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CCTV는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휨롤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Elev. Type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2,368대, 근린생활시설 29대, 총 2,397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가 다릅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휨롤D.A, 환기팬D.A 등)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주차장-1,2 지하3층], [주차장-3,4 지하1층] 2.7m로 소형(1톤)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주차장-1,2 지하 1,2층], [주차장-3,4 지하2,3층] 2.3m로 택배차량,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지하주차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인허가 도면에 의거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공사중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표지판 및 전기자동차 외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14대가(주차장-1 지하3층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1대 / 주차장-2 지하3층 급속충전기 2대, 완속충전기 4대 / 주차장-3 지하1층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 / 주차장-4 지하1층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및 벽 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및 벽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구분		내용
단지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1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구와 통로는 아파트와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2 주차구획, 출입구, 통로는 아파트와 분리되어 별도로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후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하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1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배치 예정으로 101동, 102동 저층부 일부 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2 지하1층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탈취기 등이 배치 예정으로, 116동, 117동, 118동 저층부 일부 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출입구를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조망권·환경권·약취 및 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1층 세대의 천장높이는 거실기준 2,600mm이며, 2층부터 최상층은 거실기준 2,300mm입니다.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일반 비내력벽(건식벽체)은 내력벽(옹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불박이가구, 화장대(파우더룸),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욕실거울, 욕조)의 후면 또는 측면, 바닥면, 천장과 접하는 비노출면과 거울 후면을 포함한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도배, 타일, 마루)을 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로 마감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일반 조적벽은 옹벽으로 비내력은 조적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정 등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샷시의 사양으로 인해 침실창 외부 골조 상단에 물 끊기 홈이 미설치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샷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외부 샷시가 설치되는 벽면 하단 높이가 높아져 외부 샷시의 면적 및 크기가 줄어듭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별도의 바닥드레인이 없으며, 실외기 루버에 우수 유입으로 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동형 빨래 건조대의 봉을 펼쳤을 경우 실외기실 도어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된 루버의 설치 높이와 형태는 설비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호)」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주방발코니)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주방발코니)의 천정의 별도 마감은 없으며, 모델하우스의 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 발코니 분함문의 손잡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주동의 세대내 주방창은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습과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단위세대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또는 PP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 및 다용도실(주방발코니) 문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동간 사생활보호를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및 벽체 제품 특성상 색상, 나뉠무늬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 또는 SD도어는 본 시공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제품사양은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크기,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강마루 바닥재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조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우드패턴 및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구(발코니 등)의 사양, 크기, 개폐방향 및 손잡이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벽체로써, 조적벽이나 콘크리트벽보다 방음효과가 떨어지므로 실별로 다소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벽걸이형TV, 선반, 기타종량물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의 별도 보강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가스배관과 간섭되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의 하부공간이 축소되며,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액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타입 세대 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벽체 유상옵션 선택 시 벽체의 타일 시공은 가로(수평) 및 세로(수직)의 무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타일 자재의 개별 고유 무늬로써 연결 불가)

구분	내용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가구 및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 -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선택품목(유상)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신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입 유닛,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설치)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조경 및 식재, 차·보도 선형,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갯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사양, 개수, 위치) 설치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 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 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 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건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을 통해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건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 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 TV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59A㎡, 84C㎡, 11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모형물과 홍보 제작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회사명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3,692,774,800원	830,225,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2-101-0010400호	839,781,6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중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110111-28674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지파크개발	134211-0220064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68, 5층
시공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110111-0155451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신기로 20(일직동)
	주식회사 동원개발	180111-002943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1차)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131111-014306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3, 101호(여수동)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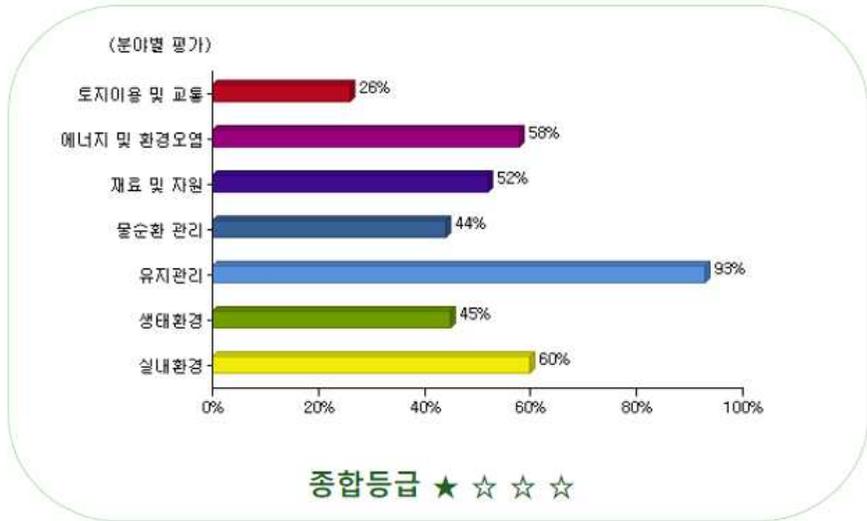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제7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열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나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다목	방습층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
기계부문 (제7조 제3항 제2호)	가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나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 제품 채택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이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
	다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라목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
	마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바목	절수형설비 설치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사목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제7조 제3항 제3호)	가목	수변전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나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다목	조명설비 설치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라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마목	공용화장실 자동정멸스위치 설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정멸되는 스위치 설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역동 중앙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022-065
건축주	주식회사 지파크개발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준공(예정)일	2025.02.28.	유효기간	2022.03.03.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주소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1-36번지 일원	인증 등급	
층수	지하3층, 지상26층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연면적	306,093.6208㎡ (평가연면적: 302,107.4242㎡)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명 : 역동 중앙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공동주택 신축공사
- 신청자 : (주)지파크개발
- 대지위치 :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1-36번지 일원
-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중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중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강질 급배수 소음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7. 연계된 녹지축 조성	-
18. 자연지반 녹지율	★★★★
19. 생태연결통	★★
20. 비오물 조성	-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2.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감토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성능	★★★
7. 에너지 성능	★
8.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9. 신재생에너지 이용	-
10.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2. 환경성실업 제품(EPD)의 사용	★★
13.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4.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5.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6.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7.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8. 빗물관리	-
19.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20. 전수형 기기 사용	★★
21.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함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컨셉트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엄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한국부동산원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역동 중앙공원(민간공원조성 특별사법)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2-주-에-1+-0054
준공연도	: 20250226	평가자	: 신민철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1-36번지 일원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3층 / 지상25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306093.6208(㎡)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7.9	70.6	54.4	14.7
급탕	30.7	36.5	27.0	7.4
조명	8.0	7.5	20.5	3.5
환기		3.5	9.7	1.7
합계	76.6	118.1	111.6	27.3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 년 02 월 25 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지파크개발의 토지를 수탁받은 시행수탁사 (주)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주)태영건설, (주)동원개발, (주)오렌지 엔지니어링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수탁사가 분양사업자가 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시행수탁사는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사에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와 시행수탁사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세대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공급계약자로 이전 등 일부해지를 포함 한다)와 동시에 공급계약 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소유권 이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사(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을 인지합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사는 분양공급자(매도인)으로서의 일체 의무(공급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공급계약자는 시행수탁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업비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수탁사는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사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합니다.
-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시행수탁사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신탁계좌의 잔액 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수탁사의 고유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지파크개발이 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지파크개발이고, (주)무궁화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5-1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더파크비스타데시앙.kr>

■ 분양문의 : ☎1522-065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시행위탁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